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진단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4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진단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환경부 훈령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술진단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기술진단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때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5(기술진단 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u>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 또는 다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및 계약 방식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이란 공공하수도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 효율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하수도법」 제20조제2항¹⁾).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제20조제1항²⁾), 이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20조의2³⁾).

이에 따라 등록된 기술진단 전문기관은 2023년 12월 기준 총 11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⁴⁾이고, 기술진단 실적 또한 전체 실적 중 95%를 차지하고 있음.

-
- 1)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3)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민간등록 현황 : 81개소('19) → 87개소('20) → 92개소('21) → 101개소('22) → 112개소('23)

[2023년도 기술진단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5	213	502	383	491	425	650	517	587	566
민간 (비율)	504 (92%)	164 (77%)	457 (91%)	331 (86%)	456 (93%)	389 (92%)	612 (94%)	471 (91%)	557 (95%)	533 (94%)
공단 (비율)	41 (8%)	49 (23%)	45 (9%)	52 (14%)	35 (7%)	36 (8%)	38 (6%)	46 (9%)	30 (5%)	33 (6%)

자료 : 환경부

그러나 기술진단 대행에 대하여 현행법상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⁵⁾(환경부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의 방법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공개경쟁의 입찰방식으로 기술진단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술진단 계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방식 적용에 대한 혼란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⁶⁾

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6조(기술진단 신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대한환경기술진단협의회 의견, 전북특별자치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내용 참조

이에 개정안은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행 방식 규정 미비의 입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대행 방식 또한 그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 (목적) 공공하수도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

□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하수관로(합류식, 우수, 우수)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	

□ 진단내용

- (현상·공정진단) 당초 설계자료와 운영현황, 현장 실측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 운영 여부 확인 등 처리계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제시
- (시설진단) 처리시설의 기계·배관설비, 전기·계장설비 등 설비 전반에 대한 정상작동여부, 운전효율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운영진단) 처리시설 운영조직, 운영인력, 유지관리비의 조사·분석
 -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 운영요원의 실무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도 등

□ 기술진단 절차

